

## 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-87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을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3월 29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○ 국제기준(UN GHS)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‘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 통합표준안(‘19.6)’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이 개정(환경부령 제896호, 2020. 12. 17. 공포)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.”라는 ‘화학물질 분류·표시기준 통합표준안(‘19.6)’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(예방조치문구)의 4항 “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.” 삭제
- 나.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“자연발화성 가스”, “에어로졸 구분 3”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“산화성 고체” 시험방법 추가 반영, 건강유해성 항목의 “피부 부식성/자극성”, “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”, “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”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
- 다.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
- 라.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(H code) 및 예방조치 문구(P code) 최신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36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[www.nier.go.kr](http://www.nier.go.kr)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